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66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노력의무 규정	3
2.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10

I. 개요

1.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6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남희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7. 26.
- (3) 회 부 일 : 2024. 7.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서비스 질이 낮고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가사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추행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신고해도 범죄로 인정받지 못해 어려워 요양보호사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해당 지역 장기요양기관 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장기요양요

원의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고려하도록 하며, 성추행 가해자에 대해 요양기관이 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3항 및 제35조의6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노력의무 규정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수가 그 지역 전체 장기요양기관 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② (생략)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 ----- ----- ----- ----- ----- <u>하</u> 며, <u>지역</u> <u>별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u> <u>수가 그 지역 전체 장기요양기관</u> <u>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u> <u>노력하여야 한다.</u>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조제4호¹⁾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²⁾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³⁾ 및 재가노인복지시설⁴⁾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함.

- 현행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설립·운영주체에 따른 별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2)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3)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노인복지법」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인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인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도의 구분은 하지 않고 있으나,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에서 설립형태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등으로 구분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설립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⁵⁾, 「노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설치에 관한 지원근거를 두고 있음.⁶⁾

□ 그런데 2023년말 기준 전체 장기요양기관 수(입소시설: 6,269개소, 재가시설: 19,376개소) 대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 수의 비율은 입소시설은 1.9%, 재가시설은 0.7%에 불과한 실정임.

- 현재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없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행법 제48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서울요양원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음.⁷⁾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6)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3.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③ 공단은 제2항제13호의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고려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설립주체별 장기요양기관 현황 >

(단위 : 개소,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입소 시설	합 계	5,762	100	5,988	100	6,150	100	6,269	100
	지자체	112	1.9	115	1.9	112	1.8	122	1.9
	법인	1,364	23.7	1,354	22.6	1,368	22.3	1,389	22.2
	개인	4,286	74.4	4,519	75.5	4,670	75.9	4,758	75.9
재가 시설	합 계	19,621	100	20,559	100	21,334	100	22,097	100
	지자체	131	0.7	131	0.6	126	0.6	148	0.7
	법인	2,532	12.9	2,586	12.6	2,621	12.3	2,573	11.7
	개인	16,958	86.4	17,842	86.8	18,587	87.1	19,376	87.7

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서울요양원(입소시설, 재가시설)은 법인으로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 서울요양원 운영현황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현릉로 590길 50 (세곡동)
건립연도	• 2014년
건축규모	• 대지 4,173m ² (1,262평) / 연면적 7,265m ² (2,201평) 지하 1층, 지상 4층
정원	• 입소시설 150명, 주·야간보호 44명 ... 총 194명
주요시설	• 유니트10개(1인실②, 2인실⑭, 4인실③⑩), 물리·온열·작업치료실, 강당, 세미나실, 구강보건실, 임종실, 식당, 기계욕실, 주야간보호시설 등
건립예산	• 269억원(토지 104억, 건물 152억, 비품 13억)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와 관련하여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돌봄 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차지하여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음.⁸⁾

8)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및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2022. 4. 20.

○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현저히 낮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비율 및 과도한 민간 의존성은 재정투입의 비효율성 및 서비스 질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므로, 장기요양서비스의 공적 책임성 강화와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차지하여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3년 8월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공급부족 지역에 대한 요양시설 확충을 목표로 2027년까지 공립 요양시설·병원이 없는 53개 시군구에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 지원, 공급 부족지역에 대한 진입제도 개선 등을 추진 중에 있음.⁹⁾

- 보건복지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인 ‘노인요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을 통하여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일반요양시설 기능보강 및 치매전담형 전환(지원대상: 지방단체단체, 비영리민간법인)을 시행하고 있음.

<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개요 >

- **(사업개요)** 공립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 및 장기요양기관 환경개선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질적 수준 향상
 - * (지원근거)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가능
- **(지원대상)**
 - 일반요양시설 기능보강(증개축·개보수 등) :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리모델링) : 지자체
 - 치매전담형 전환(증개축·개보수) :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50%(필요시 지방비 추가 지원 가능)
 -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 국비 80%, 지방비 20% (단, 서울은 50:50)
- **(지원내용)**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 수급자 증가에 대응한 공립 요양시설 지속적 확충 및 장기요양기관 환경개선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질적 수준 향상 도모
- **(지원 단가)**
 - ‘23년 기준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 및 증개축 지원단가 198만원/m²
 - * (지원단가 인상 이력) (’19) 150만원 → (’20, ’21) 180만원 → (’22~’24) 198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9) 보건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 ~ 2027), 2023. 8.

- 개정안은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제4조)에 지역별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수가 그 지역 전체 장기요양기관 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을 두려는 것임.

전체 장기요양기관 수 대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 수의 비율이 입소시설 1.9%, 재가시설 0.7%(2023년말)에 불과한 점, 서비스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지역 등에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설치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없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립 장기요양기관 비율도 극히 낮은 상황에서 30%라는 목표는 지자체 등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고, 지역별 상황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의견

- 현재 민간장기요양기관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지역별로 확충해야 할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재정 부담 증가 등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인천광역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 등 지역별 사정이 상이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2.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기본계획 중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에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명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하도록 하며,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¹⁰⁾

현행	개정안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 ----- ----- ----- -----.

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1. 2. (생략)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생략) ② (생략)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② (생략)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⑦ (생략) <신설>	1. 2. (현행과 같음) 3. ----- 사항으로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방안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요구·제공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① ----- ----- ----- -----, ----- ----없는 경우나 제35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있는 경우-----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5조의6(장기요양요원의 처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요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장기요양기관이 노동관계법령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급,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한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이하 “적정 인건비 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제39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
---	--

제36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
할 수 있다.

1. 2. (생략)

<신설>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
구 및 지급 등) ① ~ ⑤ (생
략)

⑥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
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
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
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⑦ · ⑧ (생략)

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
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시정명령) -----

--.

1. 2. (현행과 같음)

3. 제38조제6항에 따른 인건비 지
출 비율을 위반한 경우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
구 및 지급 등) ① ~ ⑤ (현행
과 같음)

⑥ -----

----제35조의6에 따른 적정 인건
비 기준을 고려하여 고시한-----

--.

⑦ · ⑧ (현행과 같음)

1)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급,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한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이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인건비 지출비율 산정시 적정 인건비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인건비 지출비율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38조는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서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인건비 의무 지출비율을 규정하고 있음.¹¹⁾¹²⁾ 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⑥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표에 명시된 비율(이하 ‘인건비 지출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1.1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5.4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7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9.0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6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8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60.4

12)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연간 인건비를 기관이 지급받은 연간 급여비용으로 나누어 계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것임.

- 그러나 현행법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인건비 지출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이를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인건비 지출비율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하게 지출비율을 미준수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재조치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 관련부처 및 관계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장기요양제도는 사회보험으로서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반대급부로 급여비용을 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급여비용 내에서 종사자와의 사적 계약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의료행위 등에 대한 수가 지급체제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에서도 의사, 간호사 등에 대한 인건비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법률에서 인건비 기준을 직접적으로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산되며,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장기근속장려금, 퇴직적립금 및 사회보험기관부담금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을 포함함.

- (인건비 지출비율 위반 시 시정명령)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관리 필요성에 공감함. 다만,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하게 지출비율을 미준수하게 되는 경우 등이 존재하는 점¹³⁾, 인건비 계약은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 간 사적 계약인 점을 고려할 때 인건비 지출비율 위반 시 직접적인 제재처분 규정 도입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인건비 지출비율 위반에 대한 관리는 시정명령 등 직접적인 제재처분이 아닌 장기요양기관 급여평가 등 간접적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13) 보건복지부는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던 기관의 종사자 일부가 갑작스럽게 퇴사하는 경우 인건비 자연 감소분으로 지출비율 위반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2) 장기요양급여 제한

□ 현행법 제35조¹⁴⁾는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로부터 급여제공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제35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있는 경우도 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즉,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와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¹⁵⁾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수급자나 수급자의 가족으로부터 폭언·폭행·성희롱 등 피해를 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¹⁶⁾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다만, 수급자의 가족에 의한 폭언·폭행 등 범죄로 인하여 급여제공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16) 쿠키뉴스, ‘성희롱 위험 노출’ 가정방문 돌봄...“단힌 공간서 피해 반복”, 2023.11.6.자 기사

을 거부할 경우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급여 외행위의 범위에는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제28조의2제1항제3호)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곧바로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 관련부처 및 관계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급여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급여거부는 생존권과 직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본인의 범죄가 치매 등으로 인해 발생할 사고일 가능성도 상당하며, 수급자의 가족이 범한 죄를 이유로 급여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03